

2014 고객만족도 4관왕 달성!

고객님께서 주신 큰 사랑
따뜻한 금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한국표준협회



한국능률협회컨설팅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일본능률협회컨설팅

신한 금융정보 가이드

제4호



03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상식

11 생활 속 정보 보호

17 보험(방카슈랑스) 현명하게 가입하기

23 금융상품 세금 가이드

35 해외 거주 고객의 궁금한 사항 모음



온세상을 사르르 녹여줄것만 같은
옛날 겨울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들으면 아~하고 작은 탄성이 터지는 겨울단어들...
난로, 병어리장갑, 썰매...

조그만 교실안 난로앞에 웅기종기 모여서
두발을 동동 구르며 친구들과 두손을 모으던 기억
목에 걸고 다녔던 병어리 장갑
목도리 휘날리며 씩씩~ 달렸던 썰매의 옛 기억들...

신한은행이 따뜻한 올겨울
고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상식

일상 속 금융관련 정보, 이것만은 알아두자!

일상 속 금융관련 긴급상황 발생시,
꼭 필요한 금융상식을 알고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텐데요...

개인 신용 정보열람권,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시 유의할 점 등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별 금융상식을 정리하였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상식

1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

- ▶ 대출 받을 당시와 비교해 신용이 현저히 개선된 경우 대출기간 중에도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취직, 승진, 소득증가, 우수고객선정, 신용등급 개선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출기간 중이라도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세부 운용 기준은 금융기관별 별도 문의 필요)
 - 금리 인하 요구권은 은행은 물론 여신전문회사 [할부금융, 캐피탈 등(단, 신용카드 업자는 제외)], 상호금융회사(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등 2금융권 대출에도 적용됩니다.
- ▶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받은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가능 합니다.
 - 일반적으로 신청 횟수는 연간 2회로 제한되며, 같은 사유로는 6개월 이내 재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평소 철저한 신용관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2 부동산 담보 대출 시 부대비용 부담주체

- ▶ 은행으로부터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각종 수수료, 세금,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성격에 따라 부담 주체가 다릅니다.
- ▶ 근저당 설정 관련 비용 부담 주체
 - ① 인지세 : 은행과 채무자가 50%씩 부담
 - ② 근저당권 설정 관련 비용
 - 국민주택채권 구입비 : 채무자 부담
 -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법무사수수료
 - 저당권 설정 시 : 은행부담
 - 저당권 말소 시 : 채무자 부담
 - ③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 평가 수수료
 - 저당권 설정 시 : 은행부담
 - 채무불이행으로 근저당권 행사 시 : 채무자 부담
 - ④ 기타 부담주체가 불분명한 비용
 - 은행과 채무자가 50%씩 부담



3 만기 후 예금, 보험, 연금

- ▶ 만기후 예금 등은 새로운 금융상품에 투자 합니다.
 -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의 약정 금리는 원칙적으로 가입 시 부터 만기까지만 적용되고 만기경과 이후에는 매우 낮은 금리 (연0.1%~1.0% 내외)가 적용되므로, 만기 후에는 새로운 예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만기 환급금이 있는 보험의 경우도 만기 경과 시 낮은 금리(1년 이내 표준이율의 50%, 1년 초과시 1%정도)가 적용되므로 만기 즉시 환급 받아 예금 등에 재투자하는 것이 유리 합니다.
- ▶ 주소, 전화번호 등 고객정보 변경 시 즉시 금융회사에 알려 만기 안내를 받습니다.
 - 보험계약 만기환급 안내는 만기 7일전까지 통보하며, 연금의 경우 연금지급개시일 1~2개월 전에 우편, 전화 등을 통해 연금수령 안내를 실시 하므로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 된 경우 즉시 금융회사에 알려서 연락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 ▶ 본인이 가입한 금융상품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생활 습관이 필요 합니다.
 - 금융상품 가입목적, 금액, 만기 등을 확인하고 만기 시 어떻게 재투자할 것인지 등을 정기적으로 검토합니다.

4 중도금 집단대출 유의 사항

- ▶ 건설사가 분양 받은 사람에게 제공하는 중도금 대출 이자 후불제, 계약금 환불 보장제 등은 은행이 이를 보장 하지 않습니다.
 - 건설사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항은 은행과 관계가 없으며 분양 받은사람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 ▶ 중도금 대출 관련 소송 또는 분쟁이 진행되더라도 은행은 분양 받은 사람에게 중도금 대출의 연체이자 부과 또는 빚독촉을 할 수 있습니다.
- ▶ 건설사가 연대보증을 제공하였더라도 중도금 대출의 최종 변제책임은 분양 받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 설령 건설회사가 분양 받은 사람을 위해 대신 상환하였더라도 다시 건설회사가 분양 받은 사람에게 대신 상환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분양 받은 사람이 분쟁발생으로 건설회사에 분양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사실만으로는 중도금 대출 상환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5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 개인정보 열람 · 정정 청구권

- 정보주체는 금융회사에 대해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정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는 개인정보 정정 요청을 받은 경우 7일 이내 조치 · 통보하여야 합니다.
- ☞ 개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4항 의거

▶ 개인정보 제공 · 이용 동의 철회권

- 개인은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금융회사)에게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개인은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인정보 이용 · 제공 조회시스템 구축 추진

'14. 9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금융회사별로 조회시스템을 구축하여 금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고객동의를 받고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중인 개인정보 현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

6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 개인정보 열람권

-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면 열람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0일 이내 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지 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정정 · 삭제 요구권

-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정정 삭제를 요청 하는 경우 10일 이내 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단, 다른 법령에서 수집대상으로 명시하는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열람제한 사유는 정정 · 삭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개인정보 처리정지권

-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정지를 요구시 10일내에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여야 합니다.
- 법률에 특별규정이 있거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및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이익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제외 됩니다.

열람 제한 사유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조세부과 등 공적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등

7 나의 신용정보 및 발급받은 신용카드 조회

▶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또는 신용조회 회사를 통해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발급받은 신용카드 현황) 조회 가능 합니다.

①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방법

자신이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의 신용정보를 확인 요청합니다.
※ 조회가능정보 : 대출정보, 보증정보, 연체정보, 카드개설정보, 당좌개설정보, 공공정보 등 은행연합회 등록정보

② 신용정보 회사를 이용하는 방법

신용정보 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4개월에 1회 무료로 확인가능)
※ 조회가능정보 : 신용조회정보, 신용등급, 신용점수, 대출정보, 보증정보, 연체정보, 카드개설정보, 당좌개설정보, 공공정보 등



8 해외에서 신용카드 결제 시 유의사항

▶ 해외에서 원화 결제 시 수수료 추가 부담

- 해외여행 또는 해외 인터넷 쇼핑시 원화결제를 이용하는 경우 실제 물품가격에 약 3~5%의 수수료가 추가되어 결제됩니다.
- 카드 원화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과는 해외가맹점이 소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으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해외에서 원화 결제 시 최종 청구금액이 최초 결제금액과 차이 발생

- 비자, 마스터 등 카드는 해외에서 원화로 카드결제를 해도 결제 대금을 달러화로 환산하여 국내 카드회사에 청구하며 국내 카드회사는 이를 다시 원화로 환전합니다.
- 고객은 원화 → 달러화 → 원화로 환전된 금액을 최종 청구 받게 되어 최초 결제한 원화 금액과 차이가 발생합니다.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상식

9 휴면 예금 · 보험 조회

▶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 전국은행연합회(www.kfb.or.kr),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또는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휴면계좌 통합조회”란을 클릭한 후 성명, 주민번호, 공인인증서 암호를 입력하면 확인 가능 합니다.

▶ 인터넷 사용이 곤란하거나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 은행, 보험회사 또는 우체국 점포를 방문하여 창구에 비치되어 있는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한 후 신분증을 제시하고 휴면계좌조회를 요청하면 조회결과를 현장에서 서면으로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10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제도

▶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 실종자 등)의 금융거래 내역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신청방법

① 상속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접수처*에 직접 방문

* 금감원 본원 · 지원 · 출장소, 은행, 우체국, 삼성생명, 동양증권, 교보생명, 한화생명, KB생명, 삼성화재

② 구비서류

– 사망일시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3개월내 발급받는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시 상속인의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등 첨부) 및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결과확인

신청일로부터 3~15일 내에 금융협회가 문자 메시지로 결과를 통보하며, 금감원 및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도 조회결과 확인 가능

11 금융상품 비교 공시

▶ 각 금융협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권역의 금융상품의 금리 등을 공시합니다.

금융 협회별 비교공시 상품의 종류

은행연합회 (www.kfb.or.kr)	예금, 가계 · 중소기업대출, 신탁,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
금융투자협회 (dis.kofia.or.kr)	집합투자상품, 연금 등
저축은행중앙회 (www.fsb.or.kr)	예금 및 대출 금리
생명보험협회 (pub.insure.or.kr)	일반보험, 변액보험, 연금보험 등
손해보험협회 (kpub.knia.or.kr)	장기보험, 자산 연계형 보험, 연금보험 등
여신금융협회 (www.crefia.or.kr)	신용카드 수수료 할부금융 (자동차, 기계 등) 및 신용대출 이자율
신협중앙회 (www.cu.co.kr)	예금 및 대출 금리
대부금융협회 (www.clfa.or.kr)	신용대출 금리 (직접대출시, 중개대출시)

※ 금융소비자보호처 홈페이지(consumer.fss.or.kr)를 통해서도 각 권역별 금융상품 비교공시 사이트에 접속 가능



12 예금자 보호 제도

▶ 예금자 보호법에서 정한 보호대상 금융상품만 원리금 보장을 해주는 점에 유의 하세요.

– 동일한 금융회사내에서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되며 예금자보호제도는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 ☎1588-0037)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상식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상품

구분	보호상품	비보호상품
은행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외화예금, 원금보전 금전신탁 등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 수익증권, 특정금전신탁, 후순위채권, 주택청약저축 등
증권	고객계좌의 현금, 신용공여 담보금, 원금보전 금전신탁 등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청약자예수금, 선물·옵션거래예수금, RP, ELS, ELW 등
보험	개인보험계약, 원금보전 금전신탁 등	법인보험, 보증보험, 재보험계약, 변액보험의 주계약, 후순위채권 등

※ 주택청약저축은 정부가 직접 국민주택기금 자금으로 100% 지급하게 됨.

13 서민금융 1332

▶ 금감원은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s1332.fss.or.kr)를 통해 서민맞춤대출안내, 신용조회 무료체험, 불법금융 행위 제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 서민금융지원제도 안내
 -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햇살론, 바퀴드림론 등 서민금융 지원제도 안내
 - 한국 이지론의 맞춤대출정보(“한눈에”)를 통해 본인소득 및 신용도에 맞는 대출상품을 확인가능
- 불법사금융 및 개인정보 불법유통
 - 대출사기, 피싱사기, 불법고금리, 불법채권추심, 유사수신 등 불법 사금융 피해사례 및 대응요령에 관한 정보 제공
 - 불법 사금융 및 개인정보 불법 유통 신고 코너, 불법 대출 중개수수료 피해 신고 코너를 통해 신고 접수
- 무료신용조회, 금융거래계산기 기능 제공
- 등록 대부업체 조회, 대부업체 금리 비교, 대출모집인 조회 기능을 제공

(출처 : 금융감독원)



생활 속 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히 유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3차 금융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생활에서 정보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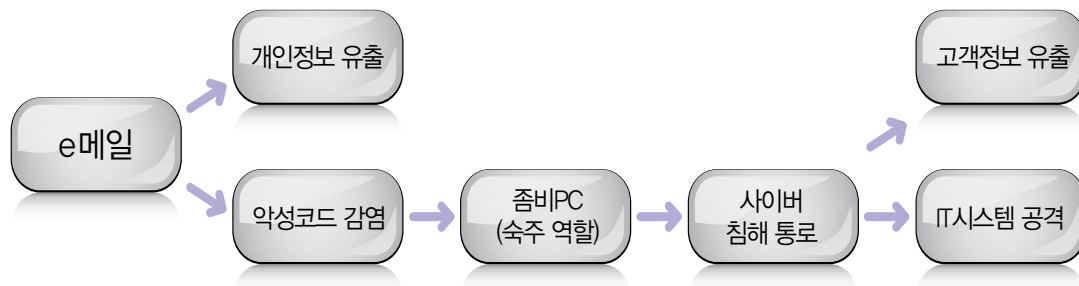
사이버 침해와 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 속 정보 보호



혹시 APT라고 들어 보셨나요?

APT(Advanced Persistent Threat)는 지능형지속공격이라고도 하며, 대표적인 방법으로 특정 개인이나 조직을 표적으로 하고, 잘 아는 지인이 보내는 것처럼 위장한 이메일을 보내 PC를 악성코드로 감염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감염된 악성코드는 장기간 잠복(4개월에서 1년까지도 잠복)하며 네트워크를 서서히 장악하고, 침투가 발각되지 않도록 조금씩 시스템 정보를 빼돌리고, 외부의 명령&제어(C&C) 서버와 통신하며 2차 공격을 노립니다.



E메일은 주로 조직 내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나 제품을 소개 또는 문의하는 내용, 그외 e청첩장, 할인광고 등입니다. E메일을 열어보면 첨부파일 또는 인터넷 사이트로 연결되는 URL이 포함되어 있는데, 첨부된 파일은 주로 워드(doc), 엑셀(xls), 한글(hwp), pdf 등 문서 파일과 확장자 scr, exe의 실행파일, 그리고 압축파일(zip)을 이용합니다. 첨부파일이나 URL을 클릭하는 순간, PC는 공격자의 침해에 필요한 숙주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예시 ① e청첩장

제 목	[e청첩장] 이OO ♥ 박OO, 우리 결혼해요~
보낸 날짜	2014/08/19 화요일 오전 1:24:35
보낸 사람	청첩장(ecard@*****.com)
받는이	
참 조	

흔한 이름의 e-청첩장입니다.
'이OO, 박OO'를 아시나요?
아는 이름이라서 열어보고 싶으신가요?
발신자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wedding_invitation.png [105KB]
	이OO_박OO_님_최종.scr [63KB]

청첩장 첨부파일입니다.
확장자가 scr인 실행파일이에요.
실행순간!!!!
악성코드는 PC안에 자리를 잡습니다. ✓

예시 ② 휴대전화 판촉

제 목	[KT 신규/변이/기변]갤5/갤노트/아이폰5S/G3/할원'0'원/가입비無유심비無24개월약정
보낸 날짜	2014/08/19 화요일 오후 11:48:12
보낸 사람	"AS폰"(phone@*****.net)
받는 사람	

휴대전화 판촉 E메일입니다.
과연 휴대전화 판촉은 업무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업무와 관련된 E메일이 아니라면 열어보지 마세요.

본문에 URL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클릭하니 간편가입신청서 작성을 요구하네요.
아직도 아무런 의심 없이
개인정보를 작성하시나요?
**작성과 동시에 악성코드 감염은 물론
개인정보까지 빠져나갑니다. ✓**

아래 "신청하기" 클릭 하셔서 접수해 놓으시면 해피콜 갑니다.

신청하기▶▶▶

간편가입신청서

ASPhone.net은 기업대상 특판전문 쇼핑몰로 해피콜 [OO회사] 근무(가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순차적으로 해피콜을 드리고 있으나, 최근 신청자가 늘어나니 양해바랍니다. 현재 정책은 2014.8.22(수) 18:00까지 공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수신자가 OO회사 직원임을 알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웹 메일! 어떻게 이용을 해야 안전할까요?

- ✓ 출처가 불분명하고 의심스러운 e메일은 절대 열어보지 않는다
- ✓ 사전에 전달받기로 한 파일 외 첨부파일은 가능한 열어보지 않는다
- ✓ e메일 본문에 포함된 URL은 클릭하지 않는다
- ✓ 확인되지 않은 Active-X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설치하지 않는다
- ✓ 백신프로그램(V3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 회사에서는 업무 목적 외에는 e메일 수/발신을 하지 않는다

경조사, 돌잔치, 휴대전화 판촉 등 업무와 무관한 e메일이나, 수신된 e메일 주소가 낯설다면 의심을 하시고 꼭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메일을 열어보는 것 만으로도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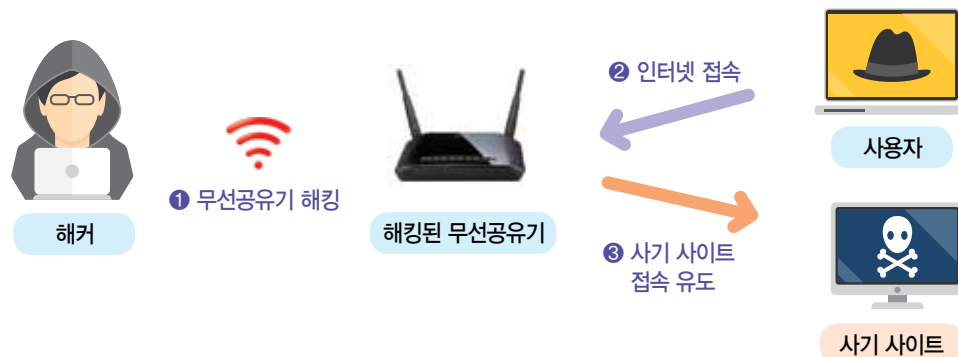
가정용 무선공유기 해킹 방지를 위한

생활 속 정보 보호



가정용 무선공유기 해킹 사례

보안설정이 미흡한 가정·사업장용 무선공유기에 해커가 무단 접속하여 공유기 설정값을 사기사이트 접속환경으로 변경 → 사용자가 인터넷 접속 시 사기사이트로 접속 유도되어 금융정보 탈취



무선공유기 보안 설정, 5분이면 OK!

가지고 계신 무선공유기. 다음과 같이 하나씩 점검 해보세요.



• 관리자를 신규설정하세요(기본값:미설정)

공유기 메뉴	관리자 설정
공유기 정보	Id Password Confirm Password 확인
고급 설정	
네트워크 설정	
외부 접속 설정	
인터넷 연결 관리	
관리자 설정	
펌웨어 관리	

• 공유기의 원격관리 기능 해제하세요.

공유기 메뉴	외부 접속 설정
공유기 정보	공유기 원격 접속 공유기 원격 접속 허용 ☐ 원격 관리 포트 확인
고급 설정	
네트워크 설정	
외부 접속 설정	
인터넷 연결 관리	
관리자 설정	
펌웨어 관리	

• 공유기는 DNS는 자동 설정으로 두세요.

공유기 메뉴	인터넷 연결 관리
공유기 정보	수동 DNS 서버 설정 ☐ 기본 설정 DNS 서버 설정 보조 DNS 서버 설정 확인
고급 설정	
네트워크 설정	
외부 접속 설정	
인터넷 연결 관리	
관리자 설정	
펌웨어 관리	

• 펌웨어는 항상 업그레이드하세요.

공유기 메뉴	펌웨어 관리
공유기 정보	펌웨어 버전 xx.xx.xx 펌웨어 수동 업그레이드 찾아보기... 펌웨어 자동 업그레이드 자동 업그레이드 확인
고급 설정	
네트워크 설정	
외부 접속 설정	
인터넷 연결 관리	
관리자 설정	
펌웨어 관리	

※ 설정하면 접속 : 무선공유기로 연결된 PC에서 기본게이트웨이 IP 주소로 인터넷 접속
 ※ 무선공유기 보안설정 방법은 각 제조사마다 차이가 있으니 제품매뉴얼을 참조하세요.



휴대폰 전화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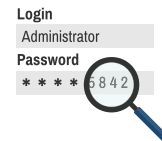
생활 속 정보 보호

휴대폰 전화사기 사례

- ▶ 경찰 사칭, 금융사기 사건 연루되었다고 전화
→ 금융정보 탈취, 이체 유도



사기범이 경찰청 등을 사칭, 고객계좌가 금융사기에 연루되었다고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요구하거나 특정 사이트에서 명의도용방지 등록 등 금융정보 탈취 유도



주요 사기 유형

- ① 금융정보요구 비밀번호 등
- ② 현금인출기 이체 유도

- ▶ 문자메시지(SMS)를 보내, 금융정보 탈취 악성앱 설치 유도

민방위 통지서 '민방위 모바일 통지서 교부입니다
확인하세요 www.jo***.m'

OO택배 9월14 등기소포 배송불가 주소불명.
정보 다시확인 http://em**.25*.com

[법원] 출석요구서 발송완료 사건조회후
출석일시확인 [전화번호 : 123-5678]

[교통법규 위반] 과속에 따른 법칙금 납부 안내.
기한내 납부바랍니다. http://***y.co**/***.apk

피해 예방수칙

- ① 경찰청, 공공기관, 금융회사, 통신사 등 사칭 주의
 - 금융사기, 보안강화 등을 빙자한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묻는 전화 일절 대응 금지
 - ※ 경찰청, 공공기관,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도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음
- ② 출처가 알 수 없는 전화 수신, 문자메시지에 응하지 않음
 - 연락처에 없는 전화 또는 문자가 수신 될 경우 사기 의심, URL 링크 클릭 금지
- ③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상태 유지
 - 백신 프로그램을 최신상태로 유지하고 실시간 감시 설정 (안랩, 알약, 폰키퍼 등)
- ④ 피해발생 시 경찰청 또는 금융회사에 즉시 신고
 - 사기전화 : 경찰청 ☎112, 금융회사 ☎ 콜센터 지급정지 요청
 - 사기문자 : 인터넷 진흥원 ☎ 118에 신고



보험(방카슈랑스) 현명하게 가입하기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나 사고의 위험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수 많은 종류의 보험 중에 내게 필요한 보험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보험은 가입기간도 장기간 유지되는 상품이라
무계획적인 보험가입은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보험을 현명하게 가입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방카슈랑스) 현명하게 가입하기

본인의 상황에 맞는 보험 설계하기

✦ 보험상품 선택 시 고려할 점

보험계약자는 보험상품 선택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본인의 상황을 파악하여 꼭 필요한 상품을 결정해야만 개개인의 목적에 맞는 보험 설계가 가능하며,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변액보험과 같은 투자성 상품의 경우 현행법상 보험회사와 보험 모집인은 보험계약자의 연령, 재산상황, 가입목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상품을 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보험업법 제95조의 3)

1 그 보험에 가입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보험에 들기 전에 그 상품이 본인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직원이 권유한다고 해서 불필요한 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보험상품은 그 종류가 다양한 만큼 보장 대상과 목적, 보험료와 보장금액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무작정 가입할 것이 아니라 현재 본인의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보장이 무엇인지 스스로 분석하여 판단하도록 합니다. 특히 보장성 보험은 저축성 보험에 비하여 보험료 · 납입기간 · 보험기간 · 주요 보장내용 ·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등을 꼼꼼히 따져 보아야만 추후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인의 재산상황에 적합한 상품인가요?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는 보장성 보험의 경우, 현재 본인의 재산 상황에 비추어 무리하지 않은 수준의 보험료를 지출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납입이 가능한지, 가계에 무리한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지 판단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가입하여야 하겠습니다. 나아가 저축성 보험의 경우 장기유지가 필수적이며, 연금보험과 같은 상품은 한번 가입할 경우 10년~20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더욱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단기간 내 해지 시 사법비 및 위험 보험료로 인하여 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해지 환급금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각종 세제 혜택도 받지 못하므로, 저축성 보험 가입 시에는 장기간의 계획을 세우고 접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험상품 내용에 대해 꼼꼼하게 설명듣기

✦ 반드시 설명을 들어야 할 사항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 회사 또는 보험 모집인은 보험 계약자에게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638조의 3, 보험업법 제95조의 2) '중요한 내용'이란 보험료와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 사유 등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사회 통념상 그 사항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해석되는 사유를 말합니다.

1 주계약과 특약의 보험료

대부분의 보험은 주계약과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계약은 해당 상품의 기본이 되는 계약으로, 주로 보험 상품명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약은 주된 보장 내용 외에 부수적인 보장을 원하는 경우 추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계약의 보험료가 저렴하더라도, 여러가지 특약을 추가하다 보면 전체 보험료는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필요 없는 특약을 다수 가입하여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반드시 보장이 필요한 특약만 선별하여 가입하고,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를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납입해야 할 액수가 얼마인지 정확히 인지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상품이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갱신형의 경우 초기보험료는 저렴하지만 일정 기간마다 보험이 갱신되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며, 비갱신형은 초기 보험료가 비싸지만 만기까지의 보험료가 가입시에 결정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저렴할 수 있으므로 가입자의 나이와 상황에 따라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2 보장 범위와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보험 가입 후 가장 빈번한 분쟁 유형의 하나가 최초 보험 가입시에 상품의 보장 범위와 면책사항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추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 데도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사례입니다. 주계약 및 특약별로 보장되는 주요 위험(사망, 질병, 상해 등)과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에 대하여는 특별히 더 상세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험계약 체결 시 직원이 개략적으로 안내해주는 내용만을 수동적으로 듣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을 묻고 최대한 상세히 설명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상품설명서 및 약관 기재 내용을 중심으로 해당 상품이 보장하는 사고의 종류와 예시, 사고가 발생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한도, 보험금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 등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실제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거나 감액 당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3 보험기간과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은 상품별로 보험기간과 보험료 납입기간이 다릅니다. 보험기간은 질병이나 사고에 대해 보장받는 기간으로 보장 만기라고도 합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은 보험료를 내는 기간입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끝났더라도 보험기간이 남아있다면 그 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보장이 이루어지므로(만약 보험 기간이 10년이고 납입기간이 5년일 경우 보험료는 5년 동안만 내고 10년간 보장을 받음), 보험료 납입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등의 실수가 없도록 보험기간을 미리 확인해두어야 하겠습니다.

4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의 해지, 효력상실 등의 경우 일정한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주는데 이를 해지환급금이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기 때문에, 중도 해지시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선불리 보험에 가입했다가 단기간 내에 중도 해지하면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등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설계서나 상품설명서 상의 해지환급금 예시표 등을 통하여 해지 환급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받도록 합니다.

5 청약의 철회, 계약의 취소 · 무효와 관련한 계약자의 권리

현행법은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 시 계약자가 주장할 수 있는 여러가지 구제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잘못 판매된 보험에 대하여 일정조건 하에 해당 계약을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시에 해당 상품이 청약 철회가 가능한지, 청약철회 또는 계약취소는 어떠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철회 · 취소 시 납입 보험료는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보험계약 체결에 이상이 있을 경우 사후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 설명의무 위반의 입증책임 및 효과

보험약관의 교부와 중요한 내용을 설명했다는 증명은 보험회사가 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계약자나 대리인이 약관의 내용을 이미 잘 알고 있는 등의 사유로 설명의무가 면제될 경우, 그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도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보험회사가 약관 교부 ·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약관 조항을 보험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며(약관규제법 제3조), 상법상 보험계약자는 계약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나(상법 제 638조의3 제2항), 보험약관에서는 계약자의 이익을 위하여 통상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험(방카슈랑스) 현명하게 가입하기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이행하기

✦ 고지의무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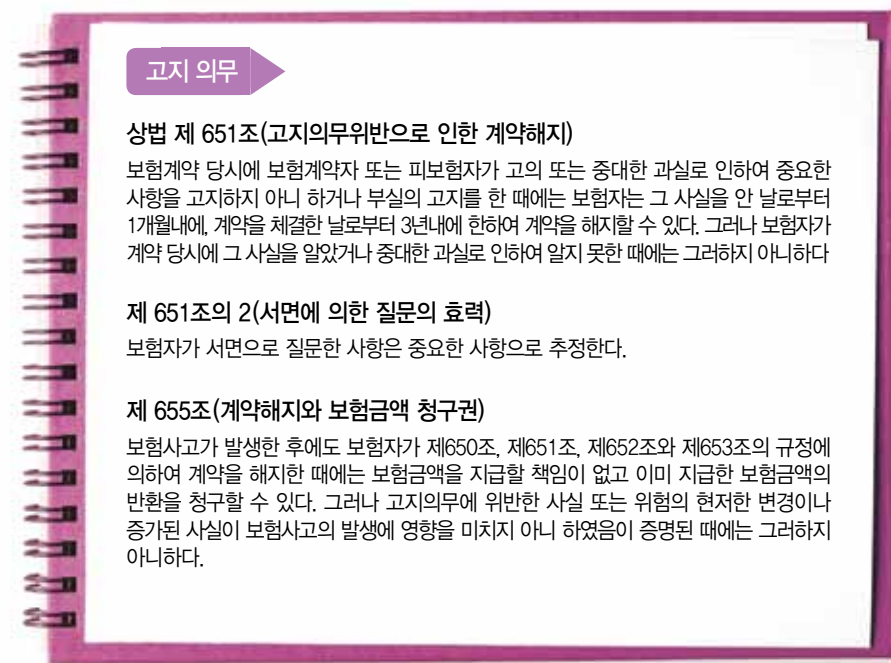
보험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보험가입자에 대하여도 일정한 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로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회사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고지의무 이행 방법

‘중요한 사항’의 내용은 대부분 보험사가 동일하며, 주로 현재 및 과거의 질병이나 장애, 직업 등에 대한 사항으로서,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발생 개연성을 측정하여 보험계약 체결여부와 보험료 등을 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상법은 청약서에 기재된 사항을 중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5년 이내의 진단·치료”에 대한 부분은 가장 많은 다툼의 여지가 되는 항목이므로, 청약서에 있는 (병력사항)질문표에 기재함으로써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 한가지 주의할 점은 고지의 상대방은 보험회사 등 고지 수령권이 있는자 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나 계약대리점은 고지수령권이 있지만, 보험설계사에게 알리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따라서 청약서에 서면으로 기재하여 보험회사에 대하여 고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겠습니다.

✦ 고지의무 위반 시 불이익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는 그 위반을 알게된 날로부터 1개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 651조) 보험약관에는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난 경우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보험회사의 권리행사 기간을 더욱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필서명은 신중하게 하기

✦ 청약서와 질문표, 상품설명서에 자필서명은 신중히

보험계약 청약서 및 질문표, 상품설명서 상 자필서명란에는 ‘보험약관과 청약서 등을 수령하였고, 약관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이라는 문구 등이 함께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란에 서명하기에 앞서 제반 서류의 교부를 요청함과 동시에 약관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해줄 것을 요청하여 그 내용을 숙지한 뒤 신중하게 서명하도록 합니다. 문서에 자필서명을 한다는 의미는 해당 문서에 기재된 내용을 알고 동의한다는 것으로 해석됨이 원칙이므로, 만일 보험약관을 교부 받지 않거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도 듣지 않았는데 직원이 말하는 대로 서명을 한다면 추후 법적 분쟁 발생시 계약자에게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설명의무 위반의 입증책임 및 효과

전화 등 통신판매 계약은 일정 조건하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 계약자와 청약과정의 녹음내용을 청약서상의 자필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자는 통화 시 질문내용에 대하여 무조건 동의할 것이 아니라, 궁금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질문하여 충분히 이해한 뒤 답변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서류는 반드시 챙겨두기

✦ 꼭 확인하고 챙겨둘 중요서류

보험가입 후 계약 당시 불완전 판매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보험금을 받지 못할 경우 분쟁조정이나 소송 시 증거를 통해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험 가입시 제반 서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청약서, 상품설명서, 약관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부분을 받아 두도록 하며, 기타 상품안내장, 가입설계서 등 보험계약 체결시 사용된 안내 자료들도 청약서 등과 함께 보관해 두면 추후 법적분쟁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해당 서류들을 분실한 경우, 회사에 요청하여 재발급 받거나 복사본을 받도록 합니다.

1 청약서

청약서란 계약자가 보험사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청하는 문서입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하여 보험회사에 알린 사항과 관계 보험설계사의 보고서 등을 판단하여 보험의 승낙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서에는 보험상품명, 보장조건별 주계약과 특약, 보험료와 납입기간, 보험기간 등 계약사항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인이 가입하려는 상품이 맞는지 확인 후 서명한 뒤 부분을 보관하도록 합니다.

2 상품설명서

상품설명서는 보험상품에 대한 중요한 정보만을 적어놓은 문서로 보험계약의 개요, 가입자의 권리와 의무, 주요 보장내용, 보험금 지급관련 유의할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험계약자가 상품설명서를 교부받고 설명을 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필 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가입한 상품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설명서이므로 명시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유의사항을 충분히 안내받은 후에 서명한 뒤 교부 받아 보관하여야 합니다.

보험(방카슈랑스) 현명하게 가입하기

3 약관

보험약관이란 보험회사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계약의 내용 및 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놓은 보험계약의 내용입니다. 약관은 가입 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일일이 기재되어 있는 등 그 내용이 복잡하고 방대하므로, 보험 상품설명서를 읽고 모르는 부분을 약관에서 확인하여, 애매하거나 추상적인 표현 등은 계약 전 모집인 등으로부터 반드시 확인하고 약관을 전달 받도록 합니다.

4 보험증권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의 성립을 증명하는 문서로, 계약 체결 후 최종적인 내용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청약한 상품과 달리 표시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고 보관하도록 합니다.

청약철회 제도

+ 청약 철회의 개념 및 대상

보험을 계약한 뒤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거나 번심에 의한 경우도 일정한 기간 내에는 위약금이나 손해 없이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 상품인 보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가입여부를 다시 한번 신중히 재고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청약철회가 가능한 보험종목은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중 가입기간 1년 이상 가계성 보험(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자동차 보험 · 화재보험 · 배상책임보험 등은 제외됩니다.

+ 청약철회 방법 및 효과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보험 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및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이 초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회사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컴퓨터 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청약 철회도 가능합니다. 보험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경우 3일 이내에 기납입 보험료를 반환하며,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 경우 일정한 이자(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계약취소와 품질보증제도

+ 계약취소의 개념과 요건

보험 계약취소 제도는 보험 품질보증제도라고도 하며, 청약철회와 달리 일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청약일로부터 3개월 내에 보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사유라 함은 ①보험회사가 약관 및 청약서 부분을 주지 않거나, ②약관의 주요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③계약자가 계약 체결시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를 의미하며, 이를 '3대 기본지킴기'라고도 합니다. '3대 기본지킴기'를 위반한 계약에 대하여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취소가 가능합니다. 보험계약자는 취소사유와 내용을 기재한 계약취소 청구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회사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 계약취소의 효과

보험 계약취소 요청이 접수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하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보험 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 지급해야 합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세금가이드

금융상품 해지 시 세금을 납부한다는 것은 알지만, 어떤 세금을 납부 하는지 꼼꼼히 살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궁금은 하지만 전문적이어서 접근하기 어렵다는 생각도 있으셨을 겁니다.

이번에는 금융세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 후 구체적인 금융상품 선택시 부과되는 세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어떤 세금을 내야 할까요?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어떤 소득이 발생할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일 것입니다. 이 두가지 소득을 바로 금융 소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 금융소득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이 다양해진 만큼 발생하는 소득도 다양합니다. 국내 비상장 주식이나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면 양도소득이 발생하기도하고, 이 외에도 연금소득이나 기타소득도 있습니다.

[표] 금융상품 투자에 따른 소득과 과세 방법

금융상품	소득구분	원천징수*	종합과세
예금, 적금 등	이자소득	15.4%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6.6%~41.8%)
적립식펀드, ELS 등	배당소득	15.4%	
해외주식매매 등	양도소득	없음	분류과세 (22%)
연금상품(연금수령)	연금소득	3.3~5.5%	공적연금 무조건 종합과세 (6.6%~41.8%) 사적연금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6.6%~41.8%)
연금상품(일시수령)	기타소득	16.5% 부득이한 경우 13.2%	3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6.6%~41.8%)

* 예외적인 원천징수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있음

▶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흔히들 알고 있듯이 보통예금이나 적금, 채권, 기업어음 등과 같은 금융상품에서 받는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구분하고, 주식에 투자해 정기적으로 배당금을 받거나 펀드에 투자해 수익이 발생하면 '배당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금융상품에서 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이자, 배당 같은 금융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보통은 금융 기관에서 알아서 원천징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vs 종합과세

원천징수란?

원천징수란 소득이나 수익을 지급하는 자가 미리 세금의 일부를 징수해 납세자 대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각 금융기관이 이자나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미리 세금을 떼 두었다가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원천징수 세율은 기본적으로 15.4%(지방소득세 포함)인데 표와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다른 세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자,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이러한 원천징수로 세금납부가 끝나기 때문에 납세자들은 별도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표] 원천징수세율

구분		원천징수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이자	일반적인 이자소득	15.4%
	분리과세 신청한 장기채권 이자	33%
	비영업대금의 이익	27.5%
배당	일반적인 배당소득	15.4%
	비실명 배당소득	41.8%, 99% ¹⁾

¹⁾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의 이자 및 배당소득은 99%(지방소득세 포함)세율 적용

종합과세란?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납세자는 그 다음해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과 합산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누진세율(6.6% ~ 41.8%, 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이중으로 내는 것은 아닙니다. 종전에 원천징수 됐던 세금은 차감하고 그 차액을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

금융상품과 관련해서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는 주로 주식을 양도할 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장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단, 상장주식 이더라도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장외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중소기업주식은 11%(지방소득세 포함), 대기업 주식이면 22%(지방 소득세 포함)인데, 대기업의 주식을 대주주가 1년 내에 처분해 양도차익이 생긴 경우에는 33%(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표] 주식 양도소득세율 상세

구분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상장법인	소액주주(장내거래)		비과세
	그 외	중소기업	11%
		대기업	대주주&1년미만 33%
		그 외	22%
비상장법인	중소기업		11%
	대기업	대주주&1년미만	33%
		그 외	22%



양도소득세는 금융소득과는 달리 분류과세 소득으로 종합과세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펀드 비과세가 과세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절세상품으로 떠올랐던 것이 바로 해외주식 매매를 일임해서 투자하는 WRAP형태의 상품입니다. 해외펀드에 투자해 차익이 생기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최고 41.8%(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WRAP상품을 활용해 해외주식을 매매하면 해외 주식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22%(지방 소득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만 내면 모든 세부담이 종료되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

고령화 시대에 연금을 통한 노후대비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세법에서는 경제 활동을 하는 시기에 벌어들인 수입에서 노후를 위해 저축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해 주는 대신 나중에 은퇴 후 연금을 받을 때에는 연금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연금소득 과세 방법은 공적연금이나, 사적연금이나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국민연금법에 의해 지급 받는 각종 연금과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이 공적연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를 제외한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이 사적연금입니다.

💡 공적연금 어떻게 과세 되나요?

공적연금은 연금을 지급하는 공단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게 됩니다. 만일 다른 종합소득 없이 공적연금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공단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면 모든 세금관계가 종료되어 편리합니다. 하지만 적은 액수라도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공적연금도 함께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사적연금 어떻게 과세 되나요?

사적연금은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나누어 받게 되는데 3.3%~5.5%(지방소득세 포함)의 낮은 세율로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원천징수세율은 언제,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80세 이후에 수령하거나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제일 낮은 3.3%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70세이후 또는 종신형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4.4%, 일반적인 경우에는 5.5%로 원천징수 합니다.

[표] 사적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연금소득의 나이에 따라		나이(연금수령일 현재)	세율
		55세이상~70세미만	5.5%
		70세이상~80세미만	4.4%
		80세이상	3.3%
소득유형에 따라	이연퇴직소득 연금 수령	3.3%	
	종신형 계약 연금 수령	4.4%	

💡 사적연금의 연간 총 수령액이 1,200만원을 넘는 경우라도 오히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사적연금의 연간 총 수령액이 1,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원천징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득들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해서 세 부담이 무조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소득은 무조건 차감해 주는 연금소득 공제도 있고 일반적으로 연금을 받을 시점에는 다른 소득이 많지 않아 낮은 소득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전체 연금수령액에 대해 원천 징수 된 세금보다 오히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공적연금을 받는 사람은 개인연금 가입이 불필요한가요?

2012년까지는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해 연간 600만원만 넘게 받아도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공적연금을 받을 분들은 별도로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꺼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적연금을 600만원 이상 받는 상태에서 개인연금이 조금이라도 추가로 발생한다면 별도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뿐 아니라 막연히 세금을 많이 내지는 않을까 걱정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2013년부터는 이러한 공적연금을 받는 분들도 개인연금 월 100만원까지는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한도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연금을 매월 100만원씩, 총 1200만원 이하로 수령하면 금융기관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나고, 공적연금은 공단에서 별도로 연말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더 이상 세금을 신고할 필요도 없고 세금을 더 내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이왕이면 추가로 개인연금에 가입해 소득공제도 받고 노후자금도 더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겠지요?

▶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

연금계좌나 퇴직연금계좌(확정기여(DC)형 계좌, IRP계좌)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됩니다.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 1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 2 불입계약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 3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지만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해서 지급받는 경우
- 4 2013년 이후에 퇴직연금계좌에 개인이 추가로 불입한 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2012년 이전 불입분은 퇴직소득으로 과세)

위와 같은 사유로 지급될 경우 먼저 금융기관에서 16.5%(부득이한 경우 13.2%, 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고, 만일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됩니다. 종합과세 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기 때문에 높은 누진세율(6.6%~41.8%, 지방소득세 포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절세 금융 상품과 세금

금융상품에 있어서 세금은 금융상품의 최종 수익률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앞서 강조 했습니다. 같은 수익률이라도 세금에 따라 실제 투자자의 이득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투자에 있어 세금이 우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개인의 투자금액, 투자기간, 투자성향 등을 고려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하고 그 포트폴리오 내에서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절세금융 상품을 종류별로 분류해 보고 해당 금융상품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비과세 상품(1) - 제한이 없는 유형

세법상 특례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경우에는 보통 가입요건이나 가입금액, 비과세 기한 등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에서 열거하지 않아서 과세되지 않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가입요건이나 한도가 없어 매우 강력한 절세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매매, 브라질 채권, 장기저축성 보험등이 그렇습니다.

1 소액주주 상장 주식

일반적으로 소액주주들이 상장된 주식을 증권회사의 매매시스템을 통해 사고 팔 때는 아무리 많은 수익이 났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에 대해 과세 되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소액주주가 아닌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거나 장외에서 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상장주식에 투자할 때는 대주주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대주주에 해당될 수 있는 기준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므로 달라진 기준에 대해 정확히 알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주주란?

양도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상장법인의 지분율 2%(코스닥/코넥스법인 4%) 또는 시가총액 50억원(코스닥법인 40억원/코넥스법인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합니다.

상장 주식에 투자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

① 배당소득세

배당 기준일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이 지급되는데 배당소득은 15.4% (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 때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이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어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5월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② 증권거래세

주식을 양도할 때는 증권거래세를 내야 합니다. 상장 주식을 팔 때 금융회사에서 증권거래세를 먼저 떼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증권거래세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하지만 상장 주식은 양도가액의 0.3%가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원천징수 되고 비상장주식이나 상장 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양도가액의 0.5%가 증권거래세로 과세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 브라질 국채

브라질 국채의 경우 한국과 브라질의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는 채권 상품입니다. 환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고율의 이자를 비과세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의 관심이 높은 투자 상품입니다.

브라질 국채의 이자소득, 왜 세금이 전혀 없는 것일까요?

이유는 한국과 브라질의 조세조약과 브라질의 조세정책에 있습니다. 현재 한국과 브라질의 조세조약에는 국채 등에 대해서는 각 발행국가에서만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브라질의 국채는 발행국가인 브라질에서만 과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세권이 있는 브라질에서 현재 외국인의 투자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외국인의 브라질 국채 투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브라질 국채의 이자소득은 한국은 과세권이 없고, 브라질은 비과세 특례를 두고 있어 한국, 브라질 어디에서도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해외 채권형 펀드로 브라질 국채를 투자한다면?

해외채권형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조세계약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 채권형 펀드에 투자했을 때와 동일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펀드 수익 중 해외채권에서 발생한 이자, 해외채권매매차익, 환차익이 과세 대상이 되고 이에 대해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 합니다.

3 물가연동 국채

물가연동 국채는 물가 변동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원금 및 이자를 소비자 물가지수에 연동시켜 놓은 국채입니다. 이 채권은 표면금리를 낮게 정해 놓는 대신 물가가 상승하면 원금이 상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표면금리가 1.5%~2.75% 정도로 일반채권에 비해 낮은 대신 물가상승분에 대한 수익을 추가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물가 하락 시에는 원금보장이 되어 안전 자산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물가연동국채 이자소득세

2014. 12. 31 이전에 발행되는 물가연동 국채는 낮은 표면금리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원금증가분은 개인들에게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별도로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2015. 1. 1 이후에 발행되는 물가연동 국채는 표면금리와 원금증가분 모두가 과세 됩니다.

4 장기저축성 보험

보험은 암보험, 재해보험, 건강보험과 같은 보장성 보험과 목돈마련이나 노후자금을 대비하는 저축성 보험으로 나뉩니다.

구분	성격	이자소득세
보장성보험	위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사고 발생 시 약정된 금액만큼 보험금 수령	과세대상 아님
저축성보험	예금, 적금처럼 불입금액에 대한 수익수령	과세 단, 요건충족시 비과세

10년이상 장기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요건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이 2013년 2월 15일 전후로 달라졌습니다. 이 날짜 이전에 계약한 저축성 보험은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면 금액에 상관없이 비과세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고액자산가들의 절세 수단으로 많이 활용됐는데 2013년 2월 15일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표] 비과세 저축성보험(2013년 2월 15일 이후 가입 분부터 적용)

종류	비과세 요건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	- 계약기간 10년 이상(한도없음) - 매월 기본보험료가 균등(최초 보험료의 1배 이내 증액 허용) - 최초선납일로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 적립식 계약 - 선납은 6개월 이내 분만 인정
상속형 저축성보험	- 계약기간이 10년 이상 - 납입보험료 2억원 이하인 경우
종신형 저축성 보험	- 계약기간이 10년이상 - 사망시 계약 및 연금 자원 소멸 (다만, 기대여명 이내로 보증기간이 설정되어있고 보증 기간 내에 사망하면 보증기간이 종료될 때 소멸)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것 - 사망 시까지 중도해지 불가

▶ 비과세 상품(2) - 인적, 금액 등 제한이 있는 유형

1 생계형 저축

생계형 저축이란 60세 이상의 개인이나 장애인, 기초생활보호자 등 저소득자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도입한 특별우대저축을 말합니다.

생계형 저축의 매력

생계형 저축은 특정 금융상품의 명칭이 아니라 여러 금융상품에 두루 적용되는 정부의 비과세 혜택을 의미합니다. 펀드나 정기예금, 저축성 보험 등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생계형 저축으로 가입하게 되면 저축기간에 관계없이 1인당 저축 원금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 생계형 저축

가입자격	노인(60세이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기초 생활보호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 유공자 등
가입한도	1인당 3,000만원
혜택	금융소득 전액 비과세
가입기한	2014.12.31 까지
가입가능상품	모든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저축

2 재형저축

재형저축은 원래 1976년에 근로자 재산 형성을 위한 저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95년 폐지되고 18년 만에 다시 부활한 상품입니다. 과거의 재형저축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바로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사업자도 일정금액 요건에 해당한다면 가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형저축 가입자격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연간 총 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재형저축 가입기간 및 한도

재형저축은 계약기간 7년으로 1회에 한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즉, 최소 7년에서 최대 10년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한도는 분기당 300만원(연간 1,200만원) 이내에서 적립 가능합니다.

재형저축의 혜택

서민들의 재산 형성을 도와주기 위해 만들어진 적립식 금융상품으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 해줍니다. 단 농어촌특별세 1.4%는 부과됩니다.

[표] 재형저축

가입자격	연간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연간 종합소득 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
가입한도	분기당 300만원(연간 1,200만원) 이내
혜택	금융소득 전액 비과세(단 농어촌특별세 1.4% 부과)
가입기한	2014. 12. 31
가입가능상품	모든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계약기간 7년인 적립식 저축으로 재형저축 임이 표시된 통장(만기는 1회 한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세금우대 저축

세금우대저축이란 20세 이상이 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저축입니다. 한도가 1,000만원 밖에 되지 않는 점이 아쉽지만 누구나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기본적으로 가입해야 할 상품이기도 합니다.

세금우대저축의 혜택

대부분의 저축은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되지만 세금우대 저축은 말 그대로 세금을 우대를 해서 9.5%(농어촌특별세 포함)의 세금만 징수합니다. 또한 다른 세제 혜택이 있는 저축들과 마찬가지로 금융소득종합 과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금우대저축의 요건

세금우대저축은 저축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의 만기가 1년 이내에 돌아 온다거나 가입한 ELS가 1년 내에 상환되는 경우에는 9.5%의 우대 세율을 적용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표]세금우대 저축

가입자격	20세 이상 누구나
가입한도	1,000만원(단,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3,000만원)
혜택	9.5% 분리과세(농어촌특별세 0.5% 포함)
가입기한	2014. 12. 31 까지
가입가능상품	모든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만기 1년이상의 저축

60세 이상이라면 필수 가입 금융상품 생계형 + 세금우대

어떠한 목적으로든지 세금 혜택을 주고 있는 금융상품은 요건에만 해당 된다면 무조건 가입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은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용에 해당되는데 그러한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이익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60세 이상이 되었다면 생계형 저축 3,000만원과 세금우대저축 3,000만원은 반드시 가입해서 세금 혜택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 소득공제 상품 - 장기적립식 펀드

정부의 증세 기조에 따라 많은 금융상품의 혜택들이 축소되고 있는데 2014년 해성같이 등장한 상품이 바로 장기적립식 펀드 입니다. 가입 당시 직전 과세 기간의 총 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장기적립식 펀드에 적립을 하면 일정금액을 소득공제 해준다고 합니다. 장기적립식 펀드란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로 기본적으로 국내주식형 펀드를 장기적립식으로 가입 했을 때 혜택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내 주식에 40% 이상만 투자하면 되므로 해외 주식에도 함께 투자하는 혼합형 펀드도 세제혜택 대상이 됩니다.

[표]소득공제 장기적립식 펀드

가입자격	가입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함)
가입한도	1인당 연 600만원 이내
혜택	납입금액의 40% 근로소득에서 공제 가능
가입기한	2015.12.31까지
가입가능상품	자산총액의 40%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적립식 펀드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으로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 이자 등의 인출이 없어야 함
사후관리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 시 총 납입금액의 6% 추징 단 사망, 해외 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하며, 소득공제로 감면 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 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

가입자격을 충족한다면 미리미리 가입

신설된 소득공제 장기적립식 펀드의 가입자격은 가입당시 직전 과세 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 만원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가입 이후에는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계속 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급여 수준의 상한금액은 두어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8천만원을 초과하기 전까진 계속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상품 - 연금저축

요즘 일반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있는 주제는 단연 은퇴준비입니다. 젊은 시절에 주택마련과 자녀 교육에 주로 신경 쓰다 보니 정작 본인의 노후 준비는 뒷전으로 밀려 은퇴 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평균 수명은 점차 길어지는 반면 직장인들의 은퇴 시기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어 체계적인 노후대비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정책적으로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직장인은 물론 사업자, 부동산임대사업자 등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이 바로 그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2014년부터 연금저축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었습니다.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절세효과 차이는 얼마나 될까?

❖ 소득공제 절세효과

말 그대로 소득공제는 소득자의 소득에서 저축의 불입액 만큼을 차감해 준다는 것으로 각자의 적용세율에 따라 절세효과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적용 세율이 6%인 사람이 연금저축에 납입을 하면 400만원의 6%(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26만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반면 적용 세율이 38%인 사람이 납입을 하면 400만원의 41.8%(지방소득세 포함)인 167만원까지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 세액공제 절세효과

세액공제는 각자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다 계산한 후 납입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즉 납입금액이 동일하다면 세액공제로 혜택을 받는 금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라는 방식의 변경으로 소득세율이 6%인 사람은 유리해 졌지만 15%이상인 사람은 불리해졌습니다.

[표]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절세효과 비교(납입금액 400만원 가정)

구분	6%	15%	24%	35%	38%
소득공제	24만원	60만원	96만원	140만원	152만원
세액공제	48만원	48만원	48만원	48만원	48만원
효과 비교	유리	불리(최대 104만원 불리)			

※ 추가적으로 지방소득세의 절세효과도 있음(세액의 10%)

연금저축 제대로 알아보기

연금저축은 가입요건은 물론 수령요건까지 매우 까다롭습니다. 우선 납입기간은 최소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18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은 노후대비를 위한 상품인 만큼 55세 이후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금의 방식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또한 초기에 많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령 한도를 만들었는데 매년 연금평가 금액을 남은 수령기간으로 나눠 120%내에서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한도를 초과하거나,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받는다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해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표] 달라진 연금저축 세금 비교

구분	내용	비고
가입대상	• 누구나 가입 가능	• 2012년 이전 만18세 이상 가입 (기존 연금저축은 신규 가입 불가)
적립시	• 연간 불입한도 1800만원 • 연금적립기간 5년 이상 • 연금수령 이후 해당 계좌에 추가불입 불가	
연금수령시	• 연금지급기간 10년 이상 • 연간 연금수령한도 있음 한도 = $\frac{\text{연금계좌 평가 총액}^*}{(11 - \text{연금수령연차})} \times 120\%$ * 연금평가총액은 매년 1.1 기준 • 사적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 한도초과 인출액은 연금외 수령 간주	• 연금수령연차 적용시 2013.3.1이전 가입분은 제 6년차부터 기산 • 2014년부터 노령자의 의료목적 한도 초과 인출액은 연금소득으로 과세
세액공제	• 납입금액 400만원 한도 12% 세액공제	• 2014.1.1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중도해지시	• 해지가산세 없음 • 중도해지 및 연금외 수령시 기타소득으로 16.5% (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단 3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해당)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시 기타소득으로 13.2%(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 2013.3.1 이전 가입 연금저축은 5년내 중도해지시 2.2%(지방소득세포함)해지가산세 과세 • 2014.1.1 이후 연금 외 수령분부터 적용

연금저축은 반드시 노후 목적으로 가입

혜택이 많다고 해서 단순히 소득공제 받을 목적으로만 연금저축에 가입해서는 안됩니다. 중도에 해지하거나 만기가 지났더라도 만55세가 되기 전에 수령하거나, 혹은 만55세 이후라도 연금 형태로 수령하지 않는다면 수익금이 아닌 원금을 포함한 수령액 전액에 대해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기타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지해서 받는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른 종합 소득과 합산 과세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을 중도해지 해 1,000만원을 받은 경우

예를 들어 해지시점에 A씨의 연금저축 평가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165만원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그리고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A씨의 근로소득과 합산해 다시 세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만약 A씨가 38.5%(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을 적용 받는다면 이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된 세율(16.5%, 지방소득세 포함)과의 차액인 22%(지방소득세 포함) 만큼인 220만원(=1000만원 * 22%, 지방소득세 포함)을 더 내야 하기 때문에 세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 고객의 궁금한 사항 모음



요즘은 해외 여행, 유학, 이민 등이 많이 보편화 되었는데요.

금융관련해서 아무 준비 없이 해외 가셨다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번시간에는 해외 출국 전 준비할 사항 및 해외송금 관련 궁금한 점에 대해서 Q&A형태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거주 고객의 궁금한 사항 모음



인터넷 뱅킹 편

Q 보통 해외에서는 크롬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신한은행에 접속하면 오픈뱅킹으로 바로 연결 됩니다. 오픈뱅킹이 무엇인가요?

A 오픈뱅킹은 Windows, Mac등의 운영체제(OS)에서 익스플로러, 크롬(chrome) 같은 다양한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이미지를 최소화한 텍스트 기반 구현으로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다양한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Q 오픈뱅킹은 OTP카드 사용이 필수 인가요?

A 오픈뱅킹은 다양한 OS 및 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 인터넷뱅킹과는 다른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브라우저 별로 보안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어 OTP와 점자보안카드를 통해서만 금융거래가 가능하고 보안카드 사용 시에는 거래내역, 잔액 등 조회 업무만 가능합니다. 보안카드 이용 고객은 banking.shinhan.com을 이용 하여야 합니다. OTP는 가까운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발급받으시거나 타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OTP를 이용하시는 경우 신한은행 인터넷뱅킹에서 현재 사용중인 보안카드, OTP 검증 후 OTP사용등록이 가능합니다.

Q 해외에서 인터넷뱅킹 이용제한이 걸린경우 어떻게 하나요?

A 해외 영업점의 당행 국내영업점 대리업무는 현지 법률 규제에 의해 중단 되었습니다. 해외에 계신 고객님의중 (이체)비밀번호 5회 오류, 보안카드 분실, 장기간 미이체로 인한 이체정지 등의 사유로 인터넷뱅킹 거래가 안되는 경우에는 직 · 간접적으로나마 국내 영업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용제한 해지방법

- 1 대한민국 영사관 방문
- 2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여 '영사관 위임장' 발급
- 3 '영사관 위임장'을 국내 대리인에게 전달
- 4 이후, 국내 대리인은 국내 영업점에 방문하여 이용제한 해지 요청

Q 본인 확인 추가 인증 대상 업무는 무엇인가요?

A 본인 확인이 필요한 업무는 고객정보 변경(휴대폰 번호는 불가), 안심거래 서비스 등 보안 서비스의 본인 확인, 의심거래에 따른 본인확인 등이 있습니다. 그밖에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있습니다. 전 금융권이 공동 시행하고 있으며 인증서(재)발급, 타공인인증서 등록, 보안카드 사용 고객의 100만원 이상 자금 이체시에 추가 인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 야간시간, 휴일, 공휴일 등 취약 시간대의 이체거래 시에는 OTP 이용시에도 추가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OTP를 이용하시는 경우, 해외 장기 체류시에는 배터리의 보증기간을 고려하셔야 하며, 해외 거주 고객님은 공인인증서의 갱신을 통해 인증서를 관리 하시면 추가인증이 생략되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Q 해외에서 진행할 수 있는 본인확인 추가인증 절차를 알려 주세요.

A 2013년 9월 26일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전면 시행 되어 해외에서 공인인증서 (재)발급, 타금융기관 인증서 등록, 누적 100만원 이상 이체거래시 해외IP로 접속하시면 해외체류확인 항목을 선택하여 추가인증이 가능합니다. (단, 한국국적의 주민번호 이용자만 가능) 해외체류확인이 활성화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외에 소재한 국내기업의 내부통신망으로 접속하셨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외IP 이용시 해외체류확인가능)

해외 송금 편

Q 해외에서 국내로 외화를 반입할 경우 금액에 대한 제한사항이 있는지요?

A 해외에서 국내로 외화를 반입할 경우 금액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으나, 외국환 거래법령 및 타법령등에 의하여 신고등을 요하는 경우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국내은행의 거래 영업점)에 신고등을 먼저 하신 뒤 반입 하셔야 합니다.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외화현찰, 여행자수표, 외화수표 등)을 휴대하여 국내로 반입할 경우 관할 세관에 신고한 후 "외국환 신고(확인)필증"을 교부 받아야 하며 동 사실은 국세청에 통보 됩니다. 신고 절차 및 은행에 제출할 서류는 거래하시는 영업점을 통하여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 고객의 궁금한 사항 모음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하는 방법은?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을 하는 경우에는 송금수취인에 대한 정보(성명, 은행명, 지점명, 계좌번호, 주소 등)를 자세히 알려주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자금을 수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신한은행의 은행코드가 필요한데 신한은행의 SWIFT CODE는 "SHBKRRSE" 입니다.

각국의 은행 코드

- ① 각국 공용 : SWIFT CODE
 - 가) SWIFT(국제금융통신망)에 가입한 은행에게 부여하는 고유번호임
 - 나) 은행명, 구각명, 도시명의 영문약어 8자리와 지점을 표시하는 3자리로 구성
 - 다) 8자리 BIC코드의 전산입력시 9~11자리는 "XXX" 또는 공란으로 처리
- ② 미국 : ABA(Fedwire, Routing) No. (아라비아 숫자 9자리로 구성)
 - ~ 미연방 은행이 Fedwire에 가입한 미국내 은행에 부여한 번호
- ③ 독일 : BLZ(German Bankleizahl) No. (아라비아 숫자 8자리로 구성)
 - ~ 독일 중앙은행이 독일내 은행들에게 부여한 일종의 지로번호
- ④ 영국 : SC(CHAPS Branch Sort Code) (아라비아 숫자 6자리로 구성)
- ⑤ 호주 : BSB(Bank State Branch) No. (아라비아 숫자 6자리로 구성)
- ⑥ 캐나다 : CC No. (Canadian Financial Institution Number), Transit No. (아라비아 숫자 8자리 또는 9자리로 구성)
- ⑦ IBAN(International Bank Account Number)
 - BAN은 EU국가로 EUR화 송금 시에 사용하는 수취인 계좌 번호가 포함된 코드입니다.
 - BAN을 사용하면 송금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으며 미기재시 추가 수수료가 차감되거나 퇴결될 수 있으며, 국가별로 11~28자리의 숫자와 문자로 구성 됩니다.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시 소요되는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해외로의 송금은 국내 송금은행에서 송금된 후 해외의 중계은행을 통하여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수취은행으로 입금되게 됩니다. 국내의 자국통화가 아닌 외국의 통화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해외의 은행과 거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 해당 통화 소재국의 대형 은행을 통하여 거래를 합니다. 통산의 경우 송금 대상국가가 미국인 경우 송금일로부터 약 2~3 영업일 정도 소요되며, 계좌번호나 수취인 성명 등이 잘못되는 경우 등 문제 발생시에는 시차 관계로 확인시 약 2~3 영업일 정도 추가로 소요되거나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으므로 만일 해당기간까지 송금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엔 거래한 영업점에 문의하게 되면 해외 중계은행을 통하여 확인해 드립니다.



해외수수료 부담을 의뢰인으로 처리하였다면 수취인은 원금 받아야 하는데 수수료가 빠졌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가요?



해외수수료는 수취인이 송금을 받기 위해 중계은행이 있는 경우 해당 은행의 송금 중계업무취급에 따른 수수료이며, 수취인이 해외거래 은행에서 송금 수령시에 부담하여야 하는 수수료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학생 경비 지급을 하고 싶는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유학생의 학비와 생활비 등 유학 관련 경비를 해외로 송금 보내려면 1개의 거래은행을 지정하여 거래하고자 하는 은행에 유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는 입학허가서나 재학증명서 중 하나의 원본 및 여권이 필요하며 지정하실 때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당해년도 첫 유학생송금 전에 재학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를 거래은행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송금시 필요사항은 해외송금을 보내는데 필요한 정보, 즉 송금 수취인, 수취은행 지점명, 계좌번호, 수취인 전화번호, 수취인 주소 등입니다. 그리고 유학생 경비 송금 및 환전 금액에 대한 한도 제한은 없으나 누계액이 연간 미화 10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되고 있습니다.



해외 유학생 등록 연장은 아무 지점에서나 가능한가요?



유학생 경비 송금은 1개의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지정된 외국환은행만을 통하여 업무를 하여야 합니다. 외국환은행은 은행 영업점 단위로 구분되기 때문에 지정한 영업점으로 매 연도별로 유학생 경비 첫 송금을 보내기 전에 재학사실 입증서류(송금 당해년도의 재학증명서나 성적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 영수증)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 제출 가능)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고객센터 연락처는?



해외에서 이용 시 ▶ 개인고객 : 82-2-3449-8000
▶ 기업고객 : 82-2-3449-8008



해외 거주 고객의 궁금한 사항 모음



해외이주를 가려고 합니다. 송금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해외이주를 가시려고 하는 경우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 영사서비스과에서 이주절차를 마치고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거래 하고자 하는 1개의 은행을 지정하여 거래하셔야 합니다. 거래은행 지정 시 제출서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여권이며, 해외이주비 지급누계액(세대별 합산금액)이 미화 10만불 상당액을 초과할 경우 이주예정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자금출처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이주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1년 이내에 현지이주를 하지 않은 경우 동 이주확인서는 무효가 되며 최장 3년 이내에 이주확인서를 근거로 이주비 지급(송금 및 환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외이주비 지급금액에 대한 별도의 한도는 없으며(세무서장이 발급한 '자금출처확인서' 에서 확인되는 금액 범위내)외화현찰, 여행자수표, 송금수표 등으로 휴대반출도 가능하며, 휴대반출시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환전하실 때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교부 받아야 하며 동 사실은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 》 해외현지 이주일 경우 해외이주신고확인서(국내로부터 이주하는 경우)를 대체하여 현지이주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또는 현지이주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해외이주예정자의 경우 현지기관 또는 영주권 등의 이주업무를 대행하는 기관(현지 이민국, 이주공사, 대행 법무법인 등)이 발급한 이주예정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외화예금 계좌에 외화현찰로 입금시 수수료가 발생하나요?



외화예금에 외화현찰로 입금시 현찰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외화현찰의 경우 원화와 달리 필요한 현찰을 해외에서 수입하여야 하며 고객님께 받은 외화는 외국으로 수출해야 하기에 항공료 등 많은 비용이 발생되므로 은행에서는 이러한 비용에 따르는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미국달러의 경우에는 입금 시 현찰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으나, 그외의 통화에 대해서는 입금 시 현찰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일본엔화 및 유로화, 영국파운드, 캐나다달러 등의 주요통화의 수수료율은 1.5%, 그 외의 통화는 통화에 따라 수수료율이 다릅니다. 미화지폐를 제외한 외화현찰로 외화예금계정에 입금한 후 외화현찰 입금액 범위내에서 동종 외화현찰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입금시에 받은 외화현찰수수료로 같음하여 인출시에 발생하는 현찰수수료는 면제합니다.



국내에서 만든 계좌를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



국내에서 만든 예금계좌는 전산망이나 각국의 외국환관리 규정 때문에 해외에 소재한 당행 영업점을 통하여 온라인 입금이나 출금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객님의께서 신한글로벌현금카드를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MasterCard, Maestro, Cirrus' 마크가 부착된 현금지급기에서 신한은행에 있는 원화결제계좌의 잔액 범위내에서 현지통화로 예금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ATM기를 이용하여 현금인출을 하게 되면 ATM 거래당시의 소정의 환율(전신환 매도율)로 원화로 환산되어 고객님의 당행 원화계좌에서 인출 됩니다. 그리고 현금 인출시 수수료는 취급건당 수수료 USD 2 와 Conversion fee (인출금액의 1%)가 고객님의 원화계좌에서 포함되어 인출됩니다. 예를들어서 미국에서 \$500 현금을 인출하시는 경우, 건별수수료 \$2 와 Conversion fee \$5 총 \$7 의 수수료가 합산되어 고객님의 원화계좌에서 \$507 에 상당하는 원화금액이 인출됩니다.



해외여행경비는 1년에 1만불까지만 환전이 가능한가요?



국민인 거주자는 해외여행경비 환전금액에 대하여 한도 제한이 없으며 동일자, 동일인 기준으로 1만불을 초과할 경우 국세청에 통보가 됩니다. 아울러 외화현찰, 여행자수표, 여행자카드, 원화자기앞수표 등을 소지하여 출국할 경우 합산한 금액이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국시 관할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이주예정자로 송금을 했었습니다. 올해 영주권을 취득하였는데 기존처럼 송금하면 되는건가요?



해외이주예정자로 지정등록을 한 경우 1년 이내에 영주권 등 취득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해외이주 예정자의 경우 해외이주비로 지정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해외이주비로 송금이 가능합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을 받습니다.

홈페이지 고객센터 내 제안코너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다음호 「신한 금융정보 가이드」 발간 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참여 방법 : 고객센터 → 고객의 말씀 → 칭찬/불만/제안 코너 내용 기재
- 문의안내 : 소비자보호센터 ☎ 080-023-0182